



#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68호 2021. 4. 2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6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9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8
- 삼척시 공고 제496호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9
- 삼척시 공고 제497호 신조·폐기(분실)·재등록 공인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498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 26
-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12호 202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28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63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4. 2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107-32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04.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음리 산24-2, 271-18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제로 2107-327	20210420	신축건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상	하	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을리 신24-2, 271-18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제로 2107-327		20210420	신축건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삼척시 고시 제2021 - 66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4. 2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325-19 (성북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04.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66-14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325-19 (성북동)	20210423	신축건물	20090626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건	강원도 삼척시 심북동 66-14	강원도 삼척시 오십진로 325-19 (심북동)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심북동 66-14	강원도 삼척시 오십진로 325-19 (심북동)	20210423	신축건물	20090626	지형지물(오십진)명칭활용			

삼척시 공고 제2021-49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1.04.16. ~ 2021.04.30.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1.05.0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최종○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6 목조/초가 (1층:58.85㎡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16.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2021 - 496호

##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토지,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자: 삼척시장
2. 사업명: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 사업개요
  - 가. 위치: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29-5번지 일원
  - 나. 사업내용: 낙석방지망 A=122㎡, 암파쇄방호시설 L=70m  
건물보상 3동 등
4. 보상대상: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1. 4. 20. ~ 2021. 5. 4.(15일간)
6. 열람장소: 삼척시 평생교육과 도서관건립TF부서(☎033-570-4445)
7. 이의신청:
 

보상계획공고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시기:
 

열람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대상자 개별 통지  
 ※ 보상시기는 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계약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9.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절차: 물건소유자와 협의 계약하되, 협의불응 시 수용재결 신청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 요청함.
- 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와 토지 등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평생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		소유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평가업자
	지번	면적(m <sup>2</sup> )	주소	성명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으로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 나. 열람결과 대상 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등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생교육과 (☎ 033-570-4445 고동현 주무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또는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관계인)	
대상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 요지 및 이유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삼척시장 귀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 사업시행자: 삼척시장

■ 사업명: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재지: 삼척시 남양동】

## 가. 토지조사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남양동	129-5	대	198	198	남○진	삼척시 오십천로 4○2	삼척○협동 조합	삼척시 새천년도로 80	근저당권	
2	남양동	129-7	중	86	86	재○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3	남양동	129-8	중	211	100	재○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4	남양동	129-9	중	957	30	재○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5	남양동	130-2	대	46	46	남○진	삼척시 오십천로 4○2				
						최○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103동1○02호(성 수동1가, 트○마제)				
6	남양동	130-3	대	73	73	김○자	삼척시 중앙로 173-○7				
합 계				1,571	533						

## 나. 지장물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1	남양동	129-5	상가	철근 콘크리트조	1동 (178㎡)	남○진	삼척시 오십천로 4○	삼척○협 동조합	삼척시 새천년도 로80	근저당권
2	남양동	130-2	주택	목조	1동 (42㎡)	남○진	삼척시 오십천로 4○2			
3	남양동	130-3	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1동 (161㎡)	김○자	삼척시 중앙로 173-○7			
합계					3동					

삼척시 공고 제2021-497호

# 신조 · 폐기(분실) · 재등록 공인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 삼척시장

### 1. 등록사유

- 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신조 및 폐기
- 나. 분실에 따른 폐기 및 재등록
- 다. 미사용 공인에 대한 폐기

2. 등록 연월일 : 2021. 04. 19.




3.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신조 및 폐기 공인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기획조정실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기획조정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기획조정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문화홍보실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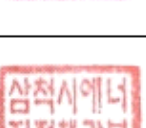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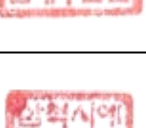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문화홍보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문화홍보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에너지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에너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에너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관광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관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민원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민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민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체육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체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산림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산림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산림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교통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교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교통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환경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환경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기획감사실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기획감사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기획감사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문화공보실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문화공보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문화공보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에너지정책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에너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에너지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관광정책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관광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관광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민원봉사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민원봉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민원봉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체육진흥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체육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체육진흥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산림복지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산림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산림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교통행정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교통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교통행정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환경보호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환경보호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환경보호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2021.04.19일자 행정기구개편	

## 4. 공인사고내역 및 분실에 따른 폐기·재등록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장소	비고
분실 (폐기)	삼척시교동 계인	1.2*2.8 (반타원형)		2021.02월 추정	교통행정 복지센터 청사	
	삼척시교동 수입금 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교동 물품관리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교동 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교동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장소	비고
분실 (폐기)	삼척시교동 일상경비 출납원인	1.8*1.8 (정방형)		2021.02월 추정	교동행정 복지센터 청사	
	삼척시교동 징수관인	2.0*2.0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재등록 공인	삼척시교동 계인	1.2*2.8 (반타원형)		폐기(분실)에 따른 재등록	
	삼척시교동 수입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교동 물품관리관인	2.0*2.0 (정방형)			
	삼척시교동 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교동 분임재무관인	2.0*2.0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재등록 공인	삼척시교동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폐기(분실)에 따른 재등록	
	삼척시교동 징수관인	2.0*2.0 (정방형)			

## 5. 미사용에 따른 폐기 공인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장인 별관민원실전용	3.0*3.0 (정방형)		미사용 폐기	

삼척시 공고 제2021-498호

##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삼척시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20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삼척시해직공무원등의복지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인사부서 / 033-570-3234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지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인사부서(☎ 033-570-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지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삼척시해직공무원등의복지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인사부서 / 033-570-3234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2호

##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2일

### 삼척시장

1. 공고기간 : 2021. 4. 22. ~ 2021. 5. 12. (21일)
2. 공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내지 제19조
    - ※ 원인자부담금(원) = 1일 오수발생량(㎡)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4.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내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957,000원/ ㎡
    - ※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시행일 : 2021년 5월 13일 예정 (공고일부터)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1. 5. 12.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 삼척시 중앙로 296, 하수도사업소
- 팩 스 : 033-570-3192

○ 문 의 처 :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부서(033-570-3368), 오수관리부서(033-570-3538)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란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